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의 절차 및 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등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안 제7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8조)

- 1)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끌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4)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5)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역 등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안 제19조 및 제20조)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하고,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안 제21조부터 제28조)

- 1)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정해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은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안 제29조부터 제34조)

-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되,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체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 3)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4)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지급하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안 제35조부터 제38조)

-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현장 복무실태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 2)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안 제39조부터 제41조)

- 1) 대체복무요원의 경고 사유 중 임무수행 태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고 절차 등 대체복무 운영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대체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사람의 대체복무요원 복무 여부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절차를 정하고, 편입 취소된 사람에 대한 의무 부과 절차 및 잔여 복무기간 산출기준을 정함.

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절차 및 기간 등(안 제42조부터 제52조)

-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집기간 등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면제 및 보류 대상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소집 절차 및 복무 관련사항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 편입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받은 날을 신청일로 본다.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등의 대리) ① 제2조에 따라 편입신청을 한 사람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편입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중 성년자
3.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역 편입신청 보완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든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대체역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거나 제5조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에 대한 임용권(「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권

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임용 및 신규채용은 제외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및 승진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1. 위원회 내 전보

2. 상위직급 상당의 직급으로 승진임용

④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로 전보, 파견 또는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하기 전에 미리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위

원회 소속 공무원 외 다른 사람은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중 공고 및 채용에 관한 규정에서의 소속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청권자로 본다.

② 위원회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한다.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

회 내에 하나 이상의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양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출입하여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전검토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일자의 지정과 변경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자를 직권으로 지정하여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일자의 변경은 위원회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며, 심사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자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심사기간의 연장사유와 심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대체역 편입결과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대체역의 복무

제19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

제20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9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일자별 필요인원 및 소집 장소 등을 기재한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의 결정)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1

항에 따른 소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 병무청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2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연기)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소집일의 연기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1조에 따른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의 명단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배치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고, 대체복무요원을 배치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이하 “대체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대체업무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지정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대체복무요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대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휴가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나.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 공가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라.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한 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때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 및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요원의 외출·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하여야 한다.

제35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

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상황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대체역 복무기록표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대체업무분야·복무형태·근무부서·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상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8조(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근무지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9조(복무의무 위반자 경고 절차 등) ①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경고 절차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대체역 편입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대체역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④ 국방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복무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매년 4월 말일까지 그 다음 해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소집될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 및 집행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시점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소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통지를 한 경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될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면제) ① 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예비군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

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의 연기)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 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0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1조에 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의 복장)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복·명찰·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 심사·의결, 위원회 구성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와 전과기록

제54조(대체역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신청인이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작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20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인원의 결정에 관한 특례)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계획서의 작성 등의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137~9 (042) 481 - 2677